e-Journal *Homo Migrans* Vol.7 (Feb. 2013): 11-22

■ 포룸 ■

윌 킴리카(Will 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박 현 숙

윌 킴리카는 캐나타 온타리오주의 킹스턴에 있는 퀸즈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 정치이론가 중 한 사람이다. 킴리카는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문제 특히 다문화사회에서 시민권과 사회 정의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킴리카는 현재까지 8권의 단행본과 200여편의 이상의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그의 저작은 32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다양한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킴리카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1989)』,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1990)』, 『정치철학에서의 정의(*Justice in Political philosophy*, 1992)』, 『다문화주의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 1995)』, 공저, 『다양한 사회에서의 시민권(*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2000』, 『자국어로 본 정치학 (*Politics in the Vernacular: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2001)』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저서인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는 영어 사용권 국가에서 다문화주의에 관한 정치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책으로 권리와 시민권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특정한 여건에서 집단의 권리의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자유주의 사상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저서로 평가받았다. 『다문화주의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은 자유주의자들이 평등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공통된 시민권 개념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다문화적 상황이 만들어진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면서 공통적 시민권 개념이 실패한 이유와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한계에 봉착한 이유를 지적하고 있

다. 이 책에서 킴리카는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민족 갈등의 해결책으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와 『다문화주의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은 정치적 다문화주의와 관련되어 가장 많이 인용되고 논의되는 저서이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저서인 『자국어로 본 정치학 (*Politics in the Vernacular: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은 18편의 논문 모음집으로, 18편의 논문에서 킴리카는 자신의 주장을 "자유주의적 문화주의"라고 칭하는 이유와 민족적 소수자(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다른 자유사회에서의 문화집단의 권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자신의 저서에 대한 비판가들의 지적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 킴리카는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연방주의, 토착민의 권리와 환경적 정의, 인종 관계, 소수자 우대 특권, 시민 교육, 세계화와 국제적 민주주의 등)를 논의하고 있다. 이중 두 권의 저서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와 *Multicultural Citizenship*은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서울: 동명사, 2005) 와 『다문화주의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 (서울: 동명사, 2010)으로 각각 번역되었다. 또한 올해 11월 30일 고려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다문화주의, 동·서 석학에게 묻다"라는 제목의 강연회에 초청받아 강연을 한 바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학계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본 연구노트는 정치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가 비전공자의 눈높이에서 킴리카의 다문화주의를 소개하기 위한 글이다. 킴리카가 주장하는 다문화주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의 저서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킴리카의 다문화주의에 대해 어떠한 반론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1)]

킴리카는 다인종국가에서 국민 만들기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소수자들-특히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민족적으로-이 국민 만들기 과정 속에 사회의 주류와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민족적 정체성을 포함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다문화주의를 주

1) Will Kymlicka지음, 책임번역 장동진, 공동번역, 장휘, 우정열, 백성욱,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서울: 동명사, 2005), 455-520.

창하였다. 서구 자유주의 국가에서 최근까지는 '선의의 무관심(benign neglect)'을 내세워 그러한 인종, 문화적 차이점을 국가가 정책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중립적 국가관이 주류를 이루어 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와 같은 인종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킴리카는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가 필요하며 시민권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사회는 심원한 다양성과 문화적 다원주의의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주장하는 정상적 시민의 모델이나 시민권 개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정상적 시민모델의 개념은 장애가 없고 이성애자인 백인 남성의 특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상성 모델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배제, 주변화, 침묵화 또는 동화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더 이상 침묵하거나 주변적 존재로 취급되거나 비정상적인 존재로 규정되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킴리카는 또한 '권리로서의 시민권' 모델의 목표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권리로서의 시민권' 모델은 토마스 마샬(Thomas H. Marshall)이 주장한 것으로 공동으로 설정된 사회적 권리가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국민문화로 통합시킨다는 것이다. 사회적 권리란 일반적으로 공통의 공적 제도를 통해 일종의 공통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통상 공통의 공적 제도는 공통의 민족 언어를 통해 작동되는데, 사회적 권리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공통의 민족정체성을 형성시키려는 목적과 결부된다는 것이다.

킴리카는 공동의 시민권리와 국민통합의 문제점은 흑인, 여성, 토착민, 인종 및 종교적 소수자, 남성 및 여성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공동의 시민권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와 사회적 냉대를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의 많은 구성원들은 이들의 사회 경제적 신분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즉 이들의 차이(difference)에 의해서도 사회적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즉 경제의 위계 외에 존재하는 신분의 위계 구조로 인해, 영국의 경우 아일랜드인보다는 영국인이, 구교도보다는 신교도가, (그리고 유태인이나 이슬람교도보다는 기독

교도가 더 낫다) 더 낫다고 말하며, 흑인, 갈색인, 또는 황인보다는 백인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동성애자보다는 이성애자가, 장애자보다는 정상인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해석, 의사소통의 사회적 양식에 뿌리 내린 문화적 부정의(cultural injustices)를 찾아내서 비천하게 여겨진 집단의 손상된 정체성과 문화적 산물들을 상향적으로 재평가하며, 문화적 다양성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인정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집단들은 '공동'의 국민문화로 통합하려는 그러한 발상 자체를 거부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보다 확장된 국가(larger state) 내에서 별개의 민족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고유한 민족 언어와 문화로 운용되는 자신들만의 공적 제도를 가진 별개의 자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공동의 시민권리 대신 차별적 시민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일부 비판자들은 이러한 요구는 이기주의적인 집단지도자들이 집단구성원들의 분개와 불평등의 감정을 조장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속적 장악을 정당화하고 동시에 이들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의 수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킴리카는 이러한 설명은 어느 정도는 진실이지만 왜 비엘리트 집단 구성원들도 종종 차별적 시민권에 대한 요구를 지지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요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킴리카는 인정의 정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자들과 다문화주의자들은 개인적 자유를 우선적으로 놓을 것인가 자율적 개인보다는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중시할 것인지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를 반대하였고, 다문화주의 옹호자들은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들은 개인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소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줄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였고, 첫 번째 작업으로 소수자 권리를 개인적 권리를 제한하는 나쁜 소수자 권리와 개인적 권리를 보완해주는 좋은 소수자 권리로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나쁜 소수자 권리를 킴리카는 내부 제재로 칭하면서 인종문화 집단이 집단의 유지를 명목

으로 국가 권력을 빌어 자신의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며,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성을 강제적으로 가정에만 묶어 두거나, 종교적인 교조주의가 합법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신정정치 또는 가부장정치 문화의 이미지에 호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의 경우는 좋은 소수자 권리로 이는 외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킴리카는 이를 외부로부터의 보호라고 칭하였다. 외부로부터의 보호는 보다 확장된 사회의 결정의 영향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존재와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킴리카는 외부로부터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수자 권리가 집단 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둘째, 소수자 권리가 집단 간 평등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인정의 정치를 적용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킴리카는 인정의 정치를 적용할 대상을 크게 다섯 개의 모델로 나누었다. 소수민족, 이민자, 고립주의적 인종종교집단, 메틱(metic, 고대 그리스 도시의 외국인 거주자로 폴리스로부터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로 거주하면서, 그 곳에 머물기 위해 세금을 낸 사람들로 주변적 존재를 의미한다. 마이클 왈쩌는 고대 그리스의 용어를 빌려와서 이러한 집단을 metics라고 부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이들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인종문화집단의 독특한 정체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신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며, 이런 인종문화집단의 제 요구를 킴리카는 다문화주의라고 칭하였다. 이들이 대부분 소수자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권리라는 용어도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킴리카는 첫 번째 집단인 소수민족을 국가에 종속된 민족과 토착민으로 양분하였다. 소수민족은 확장된 국가 혹은 제국에 의해 과거에 정복당했거나 합병된 민족들이고, 토착민들은 그들의 전승된 토지가 이주자들에 의해 침략되어서, 강제적으로 혹은 조약을 통해서 그들이 외국인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국가에 편입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소수 민족과 토착민들은 전형적으로 국가의 국민 만들기에 저항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자 민족주의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소수자 민족주의를 억압하려고 노력해 왔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수 민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별개의 민족 정체성의 유지를 금지하였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의도는 종종 소수자들-특히 토

착민들-이 퇴보적이고 비문명화 되었기 때문이며, 보다 문명화되고 진보한 국가로 편입되는 것이(심지어 그것이 그들의 의지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근거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세기에 들어서면서 소수자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점진적으로 소수자 민족주의에 대한 억압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수백 년에 걸친 법적 차별 및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소수 민족들은 자신들의 개별적 민족을 형성하려는 의식과 민족적 자율성에 대한 소망을 유지하였고, 국가가 소수자들 고유한 민족성에 대한 의식을 공격하게 되면 불복종과 분리주의 운동의 위협이 증가한다는 점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 민주주의의 체제는 소수 민족들의 충성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의 분리된 민족성의 의식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으로 선회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집단인 이민자에 대해 킴리카는 이민자 집단이란 용어는 시민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민자들은 그들을 주류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다수자들의 국민 만들기 운동에 저항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그들이 다수자들의 언어로 운영되는 일반적 제도에 통합될 때 자신들의 인종적 유산의 다양한 측면의 유지를 허용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통합에 있어서 보다 관용적이거나 다문화주의적 접근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를 거부하였고, 1960년대까지 주요한 세 이민 국가는 모두 이민자들에게 앵글로 순응(Anglo-conformity)모델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정책을 취한 이유는 이들을 통합시킴으로써 충성심을 유도하고자 하였는데, 이들이 인종적이 된다고 하여도 비애국적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자유민주주의 정책자들은 이러한 동화주의 접근이 필요하지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집단은 고립주의적 인종종교 집단으로 후터교도, 아미쉬, 하시디즘파 유태인들을 예로 들고 있다. 이들은 근대 세계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률로부터 면제되기를 원하였다. 이들은 군복무의 의무나 배심원이 될 의

무, 의무교육법으로부터도 면제되기를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자녀들이 부패된 영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들은 전체로서 국가에서 시민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투표나 재직할 권리를 행사하지도,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소한 북미의 맥락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모두가 서부 국경에 정착시킬 이민자들을 필사적으로 찾을 때, 유용한 농경 기술을 갖고 있는 이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인정해왔지만 자유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을 용인하는 것이 적실한지 불분명하다고 킴리카는 지적하였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년간에 걸쳐 이러한 면제들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긴 하였지만, 이러한 집단들이 집단 내부의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해를 끼치지 않는 한(예를 들어 아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 그리고 그들의 관점을 외부인에게 강요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그리고 구성원들이 집단을 떠나는 것이 법적으로 자유로운 한, 그들을 계속해서 관용해 왔다는 것이다.

네 번째 집단은 메틱(metics)이라는 불법 이민자 집단으로,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왔거나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주지가 없는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멕시코인들과 이탈리아의 북아프리카인 같은 사람들, 임시 거주자-임시보호를 원하는 난민들이나 독일의 터키인들 같은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온 사람들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국할 때 미래의 시민으로 심지어는 장기 거주자로도 생각되지 않았지만, 전통적 이민 국가들은 원래 계약 기간을 넘어서 머무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종종 영주권을 허용하였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의 사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어떤 국가들은-특히 자신들은 이민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 국가들-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이러한 요구에 저항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들을 통합하기 위한 절차나 토대도 마련하지 않았고, 이들이 시민권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았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메틱들을 추방 혹은 자발적 귀환의 형식으로 국가를 떠나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메틱들은 하위문화를 발전시키게 되고, 그들의 2세들은 정치적 소외로 범죄를 저지르고,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종교적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폭력을 유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심지어 비이민 국가라고 하더라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사면 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되었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점

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마지막 집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 이들은 메틱처럼 역사적으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배제 당하였다. 그들은 백인들만큼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이방인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그들은 다수 문화의 제도로 통합되는 것을 금지 당하였고 국민성을 박탈당하였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흑인들은 민권 운동을 전개하였고 민권 운동의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불균형적으로 경제적 사다리의 가장 아래에 남겨져 있었고 그 동안 진행되고 있는 배제의 결과로 흑인들은 분리주의적이고 적대적인 하위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그러한 하위문화를 허용했던 데 대한 대가로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빈곤하고 주변화 되고, 폭력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전체적인 사회에 있어서도 인간적 잠재성을 낭비하고 인종적 갈등이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었는데, 과거의 부정의에 대한 역사적 화해, 통합에 대한 특수한 보조(소수자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 정치 대표에 대한 보장(흑인이 다수가 되는 지역으로 선거구 재조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흑인 자치기구들에 대한 지원(예를 들어 역사적인 흑인 대학과 흑인에 초점을 맞춘 교육에 보조금 지급) 등이 제시되었다. 장기적 목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미국 국민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기존의 흑인 공동체들과 제도들이 강화된 이후에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킴리카는 지적하고 있다.

다섯 가지 사례를 검토하면서 킴리카가 내린 결론은 국민 만들기 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메틱이나 인종적 카스트 집단처럼, 장기 거주를 하는 어떠한 집단도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배제당하지 않는다.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에는 국가의 동등한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일종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가볍게 진행되어야만 하는데, 주로 제도와 언어의 통합에만 연관되고, 그 밖의 어떤 특정한 관습들, 종교적 믿음 혹은 삶의 방식들에 대한 채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셋째, 소수 민족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사회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

는 자신들 고유의 민족 만들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킴리카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은 서구 민주주의에서 역사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수용할 추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낙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메틱들에 대한 배제, 이민자들의 동화, 소수자 민족주의의 억압과 같은 이전의 정책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고, 따라서 새로운 양상의 인종 관계들이 검증되고 있으며, 이전의 정책들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킴리카는 다문화주의의 옹호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인종문화적 차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채택된 '차이를 불문하는 규칙들(difference-blind rules)'로부터의 이탈이 본질적으로 부정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차이를 불문하는 규칙들이 특정 그룹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의도 모든 사람을 위한 공통의 규칙들을 요구하든지 혹은 다양한 그룹에 대한 다른 규칙들을 요구하든지 간에, 특정한 맥락에서 사안별로 평가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자들은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치적 통합과 사회적 안정성을 부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정의 정치'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우리 사회가 '재분배의 정치'를 달성할 능력을 침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킴리카는 다문화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정가능성(revisibility)과 다원성(plurality)에 관한 자유주의적 전제들을 받아들이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결론짓는다.

다음은 킴리카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논의는 타리크 마흐두드(Tariq Modood)가 자신의 저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A Civic Idea*)』에서 한 주장이다.[2] 타리크 마흐두드는 킴리카가 존 롤스(John Rawls)의 자유주의 이론의 기본 개념틀에서 그의 사상을 발전시켰고 학문적인 자유주의적 이론을 정치의 관

2) Tariq Modood, *Multiculturalism: A Civic Idea*, (MA.: Polity Press, 2007), 21-35

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킴리카는 롤스식의 정치 이론의 중립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립성은 인종문화적 집단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하였는데, 마흐두드는 킴리카가 이 점을 올바르게 보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마흐두드가 킴리카의 이론에 동조하였지만 킴리카가 인종문화적인 집단에 대한 중립성의 문제의 모순점만 지적하자, 중립성이 모순된다면 인종종교적 집단에게 적용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킴리카의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흐두드는 또한 인종과 종교를 현실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왜 킴리카가 인종적 집단과 종교적 집단을 상이한 방식으로 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킴리카의 다문화주의가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에서 조직화된 종교를 시민적 평화를 위한 정부의 대담자로 받아들이고 이들 종교 집단을 제도적으로 존중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마흐두드는 킴리카가 후기 이민 다문화주의의 지지자로서 보다 큰 사회의 제도는 이들 인종적 정체성을 보다 많이 인정해주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후기 이민주의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대단한 정책과 관대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마흐두드는 킴리카의 자발적인 이민자와 통합된 국민간의 이분법은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킴리카가 소수민족과 토착민들의 여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민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들의 상황을 왜곡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마흐두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킴리카는 이민자들이 왜 '다문화적'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개인적 자율성이 '사회적 문화의 공동체원들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문화적 권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점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마후두드는 반이민적인 편견이 없고 인종과 종교를 분리하기보다는 함께 고려하는 다문화주의 이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국내에도 킴리카의 다문화주의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이 있는데, 그 중 「킴리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좋은 삶, 자율성, 그리고 문화」에서 설한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다문화주의를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온 대표적 이론가로 킴리카를 평가하면서 킴리카는 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결합을 시도함으로써 지금까지 경시되

어온 다문화주의 이슈에 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그의 이론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

그는 기존의 학자들이 지적해온 킴리카의 이론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는데, 우선 킴리카의 이론의 문제점은 본질주의적이라는 것과 사회적 문화 개념이 너무 동질적일 뿐 아니라 하나의 민족 혹은 종족집단과 문화사이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수민족과 소수종족의 구분이 지나치게 이분법적이라는 것이고 여타 범주의 소수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정과 문화적 정체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들을 외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종, 민족적 차별과 같은 문제들, 혹은 불평등한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수집단이든 다수집단이든 이들의 사회적 문화는 단순히 도구적인 이유로 보호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 특정한 문화가 그 사회집단에 대해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에 근거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정리하였다. 필자 자신 역시 킴리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적 유대를 자율성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격하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관계를 기능적 관계로 변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킴리카는 좋은 삶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율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율성을 문화 속에서 구현되는 다른 모든 가치 위로 평가되는 하나의 근본적인 최고선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개인의 자율성이 유일한 도덕적 기준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인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회적 관계와 자율성의 가치가 환원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결합을 위한 킴리카의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자율성'과 '문화에 의해 가능한 선택의 자유' 사이의 등치는 비논리적이며 결국 겉으로만 그럴듯한 것임이 드러난다고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다문화주의 논쟁: 브라이언 배리와 윌 킴리카의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한준성은 다문화주의 논쟁사에서 영향력이 큰 두 정치이론

3) 설한, 「킴리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좋은 삶, 자율성, 그리고 문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1호, 2010. 3, 59-84.

가인 브라이언 배리와 윌 킴리카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였다.[4] 브라이언 배리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시각에서 다문화주의를 강력히 비판한 학자이며 윌 킴리카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시각에서 다문화주의를 적극 지지하는 학자이다. 한준성은 두 사람의 주장을 '개인과 집단,' '권리와 문화,' '정의,' '사회통합'의 네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박병섭은 「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연구-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에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윌 킴리카) 입장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등을 다루고 있다.[5]

박병섭은 한국에는 소수집단으로 소수민족, 원주민은 없고 이주자집단만 있는데, 한국의 이주자집단에는 여성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이주 영어노동자, 새터민, 종족 중국인, 그리고 주한미군의 한인여자친구와 그들의 자녀가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 박병섭은 이들 중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 이민자를 윌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정치철학으로 다루면서 이들을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권리와 선 개념이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상 킴리카의 다문화주의와 킴리카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노트는 킴리카의 다문화주의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킴리카의 다문화주의는 현실 적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론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중립성과 선의의 무관심의 문제를 표면으로 끌어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원리의 허점과 모순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론적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과 역사적으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작업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킴리카가 이론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이론의 적용과정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이론에 재반영한다면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이론은 다문화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혜안을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강대 사학과, hsppp@hanmail.net

---

4) 한준성, 「다문화주의 논쟁: 브라이언 배리와 윌 킴리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 19집 제1호, 2010, 289-316.

5) 박병섭, 「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연구-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와 철학』제18호 2009. 10, 291-356